

포항원광보은의집과 함께하는

**온라인 노인인권,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인권과 노인인권



01.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문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권과 노인인권



02.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이며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권과 노인인권



02. 노인인권이란?

좁은 의미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

넓은 의미

나이의 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

03. 노인 인권의 영역

01

인간존엄권

행복을 추구하고
평등할 권리

02

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신체/정신/경제/정치적
으로 자유할 권리

03

사회권

결재권,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평생교육권,
문화생활권, 사회참여권,
가족유지권, 소통권

04

청구권

청원권,
재판/형사보상/국가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 절차적 권리

04. 노인을 위한 UN원칙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05.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06.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0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02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0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
의식주 등 기본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0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05

노인을 위해
증여, 급여된 물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07.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07. 노인학대의 유형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07. 노인학대의 유형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07.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의 자산을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 착취 및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07. 노인학대의 유형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는 행위

07. 노인학대의 유형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24시간 연중 무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

08. 노인학대 예방 수칙

1.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2. **경제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세요.
3.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세요.
4. 노인이라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 주는 일**을 많이하세요.
5.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6.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세요.
7. 학대받는 것을 자책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THANK YOU

어르신을 사랑하는, 어르신이 행복한 포항원광보은의집